(全매체) 2013년 7월 2일(화) 11:00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.smba.go.kr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보 도 자 료

성장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• 문의 : 창업진흥과장 김성섭(042-481-4407) 사무관 이상천(3991) 주무관 기정희(8921)

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(One Day, One Business)

『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』 본격 가동

개 요

□ 국민 누구나 **자신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창업(사업)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(사업화 플랫폼)**이 만들어진다.

○ 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은 국민의 생활 속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경쟁력을 갖춘 창업(사업) 아이템으로 실현하기 위한 **「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」를 7월 2일부터 실시**한다고 밝혔다.

□ 「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」는 국민의 창의력을 기반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**새 정부가 마련한 "창조경제 실현계획"의 일환으로 추진**되며,

○ 자본과 창업준비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**누구나 성공적으로 사업화·창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**한다는 취지의 汎국가적 사업이다.

세부 내용

1 아이디어의 사업화 플랫폼 구축

□ 우선 汎국민적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발현, 창업·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**'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'을 구축, 제공**한다.

○ **전문 운영기관이 온라인 기반의 사업화 플랫폼(웹사이트)인 “아이디어 오디션”(www.ideaaudition.com)을 구축**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창업(사업)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,

○ 온라인으로 제출된 아이디어는 사업화 플랫폼(www.ideaaudition.com) 내에서 **‘대중(네티즌)의 투표와 전문가 심사’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별**하고, 아이디어 제공자는 창업(사업화)의 기회를 얻게 되며,

○ 창의적 아이디어가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**연중 상시적으로 운영**된다.

2 사업 운영방식 : 아이디어 사업화/창업화로 구분

□ 「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」는 **아이디어 제안자의 특성에 따라 아이디어의 “사업화”와 “창업화”로 구분하여 추진**된다.

○ **(아이디어 사업화)** 플랫폼 운영기관이 제안된 아이디어 구체화, 시제품제작, 마케팅까지 全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방식으로,

- 일반 국민은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아이디어의 제품화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는다.

○ **(아이디어 창업화)** 아이디어 제안자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모든 창업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,

- 플랫폼 운영기관은 아이디어 구체화까지만 지원하고, 정부는 창업자 역량평가 등을 거쳐 창업자금(5천만원 이내)을 지원한다.

□ **각 분야별 세부 운영과정은 다음과 같다.**

① 아이디어 사업(제품)화

○ 학생, 직장인 등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,

- **전문가와 네티즌이 평가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**하고, 아이디어 보완·구체화 과정을 거쳐 시제품으로 제작되고,

- 시제품 중 소비자 평가를 거쳐 제품화 대상을 선정하고, **위탁제조 기업과 매칭하여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**,

- 양산된 아이디어 제품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**운영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으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제품을 판매**할 계획이다.

○ 아이디어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“아이디어 제공자 및 운영기관” 명의로 공동 출원하고,

- 지식재산권 출원 후 1년 이내에 사업화 되지 않을 경우 “아이디어 제공자”에게 권리를 환원하며,

- **아이디어 상품의 매출액 중 5~15%를 아이디어 제안자, 운영기관, 평가단에게 각각 1/3씩 수익으로 배분**한다.

② 아이디어 창업화

○ 창업의 꿈을 갖고 있는 예비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 창업화도 병행 운영되는데,

- 창업화 아이디어 역시 수시접수를 통해 네티즌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발전된 사업계획으로 구체화된다

○ 선정된 창업 아이디어 제공자에게는 **창업캠프를 통해 “창업교육, 역량진단, 비즈니스 모델 개발” 등의 기회를 제공**한 후,

- “사업계획서 실현성 및 창업자 역량평가”를 통해 **창업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**하게 된다.

3 민간 중심의 국민 아이디어 시장 조성

□ 민간 전문기관 주도의 사업추진을 통해 **민간 중심의 "국민 아이디어 시장" 형성 및 아이디어(시제품) 거래도 추진할** 계획이다.

○ 민간기관이 사업의 전 과정(공모 → 평가 → 시제품제작 → 제품제조 → 마케팅 → 수익배분 등)에 참여하되, 정부의 운영경비 지원 없이 순수 **마켓베이스로 사업을 추진***하며,

*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은 전문가 및 소비자가 시장성이 있다고 선정한 시제품 아이디어에 한정하고, 플랫폼 운영기관은 사업화 후 매출발생 시에 한하여 수익배분에 참가하고 운영경비를 충당

○ 일회성·이벤트성 아이디어 양산이 아니라, **제안된 아이디어와 기존 기술·생산시설의 결합·융합**을 통해,

- 아이디어 제안자, 플랫폼 운영기관, 위탁생산(OEM) 기업 등이 서로 Win-Win 할 수 있는 구조를 실현할 계획이다.

□ 또한 "**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**"는 기조 아래, "**매일 하나의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연결**"(**One Day, One Business**)되도록 노력하고,

○ 플랫폼 내에서 위탁생산(OEM)기업과 매칭이 이루어지지 못한 시제품 아이디어는 **별도의 "아이디어 거래시장"(사업화 플랫폼 내 구축예정)을 통해 다른 위탁생산기업과 매칭을 지속 추진**하여 아이디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.

4 아이디어 보호 방안 강구

□ 현행 특허법상 단순 '아이디어'는 권리보호 대상이 아님에 따라, **아이디어 제안·공개에 따른 盜用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대책을 강구할 계획**이다.

○ 우선 아이디어 신청단계부터 “공개/비공개”로 구분하여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**일반 대중이 아이디어를 경중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개를 결정**할 수 있도록 하고,

- 공개된 아이디어 중 전문가 평가*를 통과한 우수 아이디어는 신속하게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여 아이디어를 보호할 계획이다.

  * 아이디어 평가에 참여하는 네티즌 및 전문가 평가단도 적극적 비밀유지 등을 통해 제출된 아이디어의 외부도용 가능성을 차단

○ 또한, **특허법 제30조의 『공지예외주장』 제도를 활용**하여

- **아이디어가 공개되더라도 공개시점부터 12개월 이내(디자인 6개월 이내)에 본인이 특허출원을 할 경우 법상 권리보호가 가능**하므로,

- 아이디어 제출단계에서 동 제도를 사전에 공지하여 스스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보호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.

의 의

□ 중소기업청에 따르면, 이번 「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」는 **정부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현장에서 가시화하는 사업**으로서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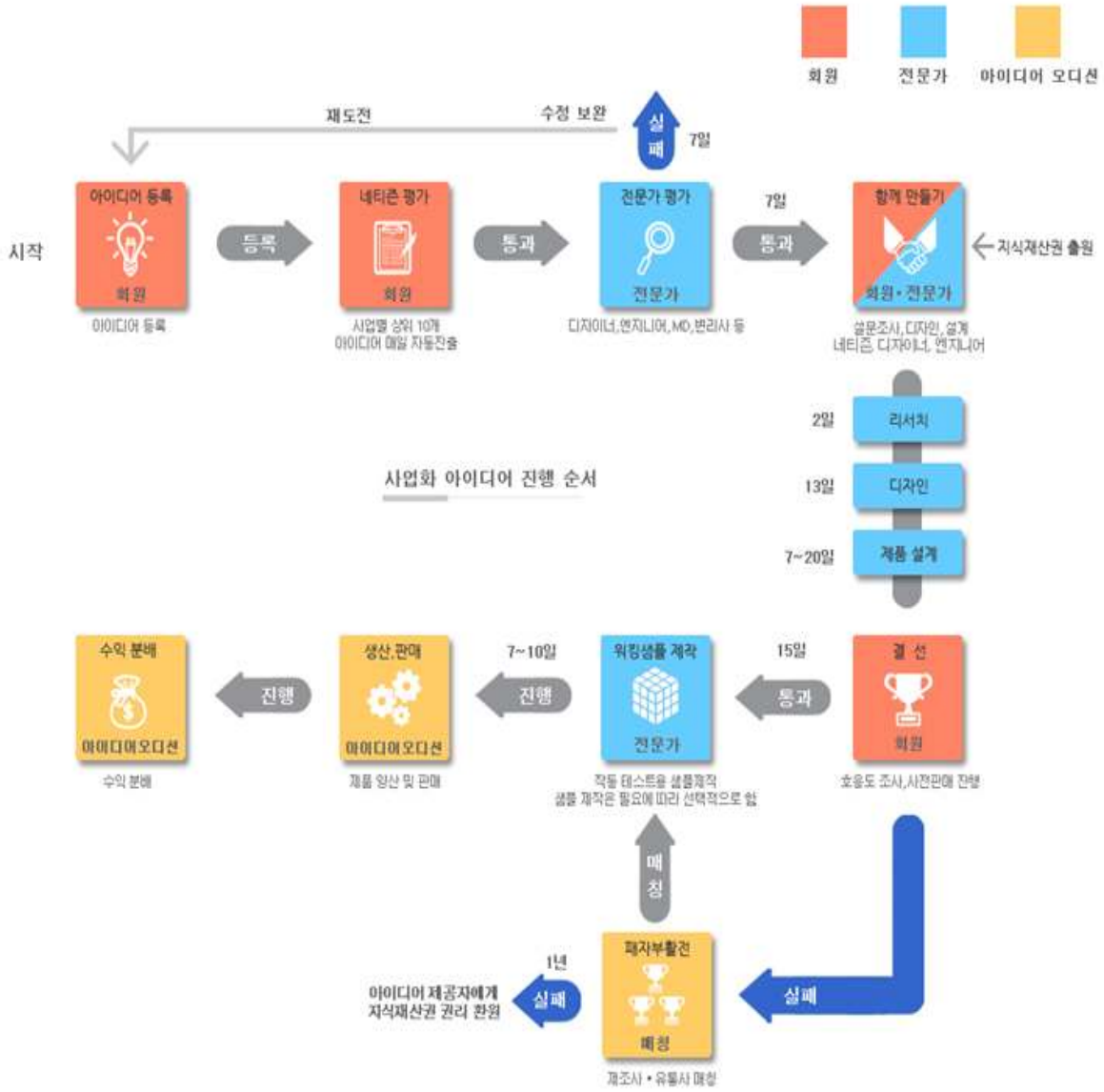
○ **“국민, 제조기업, 운영기관”이 서로 윈윈(Win-Win)할 수 있는 사업구조**를 통해 **국민들에게 아이디어 제안만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**하고,

○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기존 기술·생산시설과 융합”을 통해 **전 국민의 자발적 창업분위기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**하는 한편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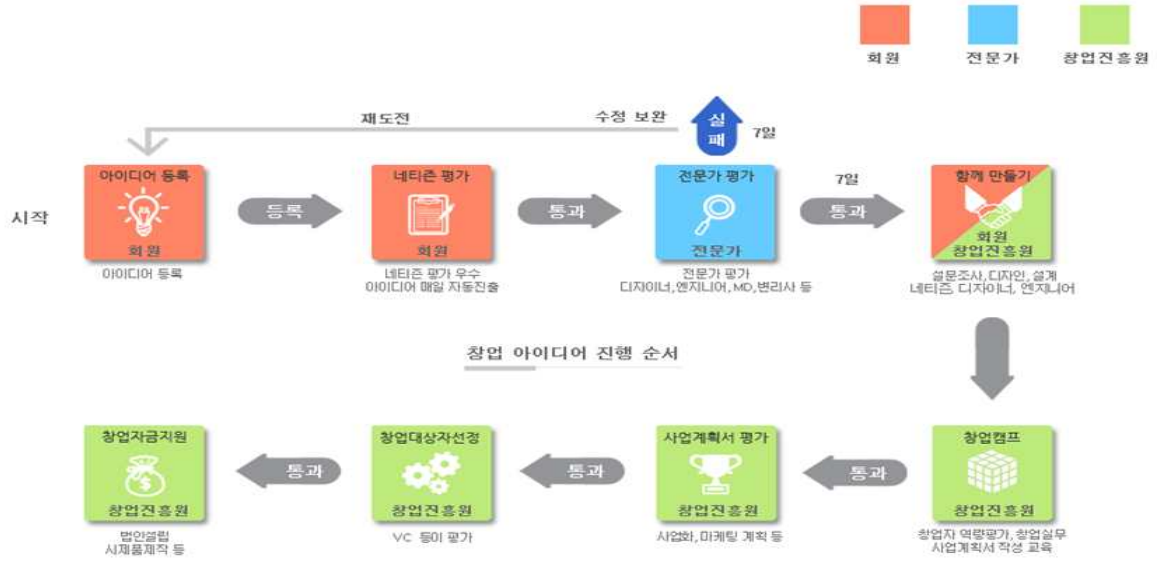
○ 일반 국민의 상상력에 기반한 사업 운영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3대 목표인 “**창조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**출”하고 “**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를 구현**”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붙임1	「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」 운영 프로세스

1. 아이디어의 사업(제품)화



2. 아이디어의 창업화



붙임2	「공지예외주장」

○ **특허법 제29조제1항에 관한 규정은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면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,**

○ 특허법 제30조(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)에 관한 규정은 비록 **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할지라도 일정요건*을 갖춘 경우,**

-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의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지 않음

○ **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기 위한 요건**

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공지 등이 된 경우

② 공지 등이 된 날(공지 등이 된 날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밝혀진 월, 년의 초일)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할 것

③ 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할 것

④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